안산대학교	고숙련일학습병행(P-TECH) 계약학과운영규정	규정번호	3-4-26
		제정일자	2022.03.01.
		개정일자	2023.05.01.
		개정차수	2차
		소관부서	산학협력처 (AU일학습병행 공동훈련센터)

제1조(목적) 이 규정은 학칙 제4조의2에 의거 고숙련 일학습병행(P-TECH)계약학과(이하 “P-TECH 계약학과”라 한다.)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일학습병행”이라 함은 사업주가 근로자를 고용하여 주로 해당 근로자의 근무장소 또는 해당 기업의 생산시설·장비를 활용하여 기업 내의 전문적인 기술·지식이 있는 자로 하여금 해당 근로자의 직무수행에 필요한 지식, 기술, 소양 등을 전수하는 교육훈련(이하 “현장훈련(OJT)” 이라 한다)과 이를 보완하기 위하여 근무장소 또는 생산시설과 분리된 시설이나 교육훈련기관에서 실시되는 교육훈련(이하 “현장외훈련(Off-JT)” 이라 한다)을 함께 제공하고 그 결과에 따라 자격 또는 학력 등으로 인정받도록 하는 교육훈련을 말한다.
2. “P-TECH 사업”이라 함은 고교단계에서 산학일체형 도제학교 훈련을 수료한 자를 대상으로 폴리텍·전문대 등과 연계하여 실시하는 중·고급 수준의 기술훈련 과정을 말한다.
3. “학습근로자”라 함은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1호에 의하여 근로자로서 학습기업의 사업주에게 고용되어 근로를 제공하면서 일학습병행을 제공 받는 사람을 말한다.

제3조(P-TECH 계약학과 설치·운영) 교육훈련을 운영하는 P-TECH 계약학과는 학칙 제4조의2 제2항에 의하여 <별표 2>와 같다.

제4조(P-TECH 계약학과 운영위원회) ① P-TECH 계약학과 운영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조정하기 위하여 P-TECH 계약학과 운영위원회를 둔다.

② P-TECH 계약학과 운영위원회의 위원장은 산학협력처장으로 하고, 위원은 총장이 임명하는 본 대학 교직원, 계약에 참여한 산업체 관계자 및 학생을 포함한 9인 이내로 구성하며, 산업체 관계자 및 학생을 합한 구성비가 위원의 3분의 1이상 되도록 한다.

③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④ P-TECH 계약학과 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할 수 있다.

1. 계약업체 선정, 계약체결 및 학생선발에 관한 사항
2. 예산편성, 운영계획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3. 본교와 산업체간 상호협력에 관한 사항
4. P-TECH 계약학과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 및 학생 등록금에 관한 사항
5. 재학중 퇴직, 인사이동 또는 P-TECH 계약학과의 폐지로 인한 재학생 보호 등에 관한 사항
6. 기타 P-TECH 계약학과 운영에 관한 중요사항

제5조(등록금) ① P-TECH 계약학과에 입학한 학생의 등록금은 고용노동부의 국고지원금으로 지원받는다.

② P-TECH 계약학과 학생의 등록금은 고용노동부의 교육훈련비 지급 정책에 따라 능력단위가 종료되는 시점인 학기 후에 납부한다. <신설 2022.07.01.>

③ 학생의 결석으로 고용노동부의 지원금 감액이 발생한 경우에는 학생이 별도로 차액을 부담하여야 한다. <신설 2022.07.01.>

④ 학생이 중도탈락한 경우 교육부의 “대학 등록금에 관한 규칙”에 따른 등록금 반환기준에 준하여 등록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신설 2022.07.01.>

제6조(입학자격) P-TECH 계약학과에 입학하려는 자는 일학습병행 운영매뉴얼의 참여요건의 항목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야 한다.

1. 삭제 <2022.07.01.>
2. 삭제 <2022.07.01.>
3. 삭제 <2022.07.01.>
4. 삭제 <2022.07.01.>

제7조(교육과정의 편성·운영) ① 교육과정의 편성 및 운영은 한국산업인력공단으로부터 인정받은 P-TECH 사업 프로그램 개발보고서를 따른다.

② 수업은 일학습병행 운영규정에 의거하여 현장훈련(OJT)과 현장외훈련(Off-JT)으로 운영한다.

③ 교양과목 및 전공과목의 경우 P-TECH 사업의 특수성을 감안하여 별도로 편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④ 현장훈련(OJT)과 현장외훈련(Off-JT)의 학점은 한 학기간 15시간 이상의 강의를 1학점으로 한다.

⑤ 출석 인정 기준의 경우, 고용노동부 한국산업인력공단의 「일학습병행 운영매뉴얼」의 내용을 따른다.

⑥ 현장훈련(OJT)은 기업현장교사 및 대학 소속 학과 지도교수를 지정하여 운영하되, 현장훈련(OJT) 및 현장외훈련(Off-JT)를 포함하여 학사 제반사항에 대하여는 공동훈련센터와 학생이 소속된 학과에서 공동으로 운영 관리한다.

⑦ 현장훈련(OJT)교과목은 개설시 최소 수강인원의 제한을 두지 않는다.

⑧ 현장외훈련(Off-JT)과정은 교육과정 특성에 따라 주말에도 대학에서 실시할 수 있다. <신설 2022.07.01.>

⑨ 현장훈련(OJT)은 기업현장교사가 수업을 전담하여 운영하고 교육과정표에 따라 학점을 부여하며 학과장이 학점을 확인한다. <신설 2022.07.01.>

제8조(학사제도 예외 적용) ① P-TECH 계약학과의 학습근로자는 휴학, 전과, 재입학 등이 불가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불가피한 휴학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훈련 중지의 요건 및 절차는 고용노동부「일학습병행 운영 및 평가 규정」에 따른다.

② 현장외 훈련(Off-JT)과목은 교내출석부를 활용하고, 현장훈련(OJT)과목의 경우는 사업 주관기관의 출석부 또는 관련서류로 대체할 수 있다.

제9조(제적) 협약기업을 퇴사한 자는 제적 처분할 수 있다.

제10조(설치·운영 기간 및 재학생 보호) ① P-TECH 계약학과의 설치·운영 기간은 계약에 의하되, 학위 수여기간 이상으로 한다.

② P-TECH 계약학과가 그 설치·운영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폐지되는 경우 당해 P-TECH 계약학과에 재학생 보호 방안은 운영위원회에서 논의하되 당해 P-TECH 계약학과 재학생이 본인의 귀책사유에 기인하지 아니하는한 학위를 취득할 수 있도록 협력한다.

제11조(학생 선발의 기준 및 방법) P-TECH 계약학과 학생의 선발은 본교 입학모집요강에 의하여 선발하되, 이에 관한 세부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제12조(장학금) 국고지원금으로 등록금을 지원받는 P-TECH 계약학과 학생은 국가장학금을 받을 수 없음을 원칙으로 한다.

[본조신설 2022.07.01.]

제13조(준용규정) 이 규정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학칙 및 관련 제 법령을 준용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22 년 3 월 1 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22 년 7 월 1 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23 년 5 월 1 일부터 시행한다.